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보다 나은 정부
	배포일시	2020. 2. 17(월) 총 3매(본문 3)	
담당 부서 / 자동차운영 보험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중기, 팀장 윤종빈, 사무관 연규성, 주무관 유세형, 이정록 • ☎ (044) 201-4871, 4873, 3861	
보 도 일 시	2020년 2월 18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18(화) 10:00 이후 보도 가능		

두 달 이상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(견인)된다

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통과

□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(견인)하게 되고,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(사기)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.

○ 또한,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·택시·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**무단방치 차량 관리**를 **강화**하는 **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안,** 자동차 **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「자동차등록령」 개정안,**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**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」 개정안**이 **2월 18일**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① **무단방치차량**의 **강제처리** 요건인 **'방치기간'**을 구체적으로 **특정** (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)

○ 얼마동안 차량을 방치해야 강제처리가 가능한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 놓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웠으나,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**'2개월 이상' 방치**하는 경우 **강제처리 가능**하도록 개선되었다.

- 다만, 자동차가 분해·파손되어 **운행이 불가능**한 **경우**에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**15일**로 규정하였다.

② 자동차 **말소등록 신청요건**에 **편취**당한 경우 **추가**(자동차등록령 제31조)

○ 그동안은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하였고, 편취(사기)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요건으로 처리하지 못해,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, **편취당한 경우**에도 **말소등록**이 **가능**하도록 하였다.

③ **개인정보 제공의 범위·절차·방법 명시**(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4)

○ 법에서 정한 **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**만 **제공**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, 위반일시 등을 **한정**하고 **제공 대상자, 제공 정보 등을 기록·관리**하도록 하였다.

- 이에 따라, **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**처럼,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**보험료 산출**(할증) **및 보험금 지급** 업무에 **활용**할 수 있게 되었다.

* (사례1) A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계약자 김00(40세, 남성)의 음주운전 법규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보험 계약 시 특별할증을 부과하였으나, 자동차공제조합은 이런 사실을 몰라 특별할증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.

* (사례2) 마트를 운영 중인 강00(50세, 남성)의 면허 정지 기간 중 식품을 배달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B보험사는 무면허정보를 확인하여 보험금(대인Ⅱ·대물) 지급을 하지 않았으나, 자동차공제조합은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험금(대인Ⅱ·대물)을 지급하고 있다.

□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」 개정안은 2월 27일부터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및 「자동차등록령」 개정안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 이중기 과장은 "차량의 **무단방치 기간**에 대한 **일관된 기준 적용**에 따라 차량방치에 따른 **국민불편 감소** 및 **재산권 침해**를 **방지**할 수 있게 되었고,

○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**활용**할 수 있게 되어,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**안전의식 제고**로 **교통사고 발생 감소**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"고 밝혔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연규성 사무관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, ☎ 044-201-4871), 이정록 주무관(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, ☎ 386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